



— 2010년도 관세감면대상 공장자동화 물품 [www.kcea.or.kr](http://www.kcea.or.kr)

## 2010년도 관세감면대상 공장자동화 물품



「관세법 시행규칙」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2009년 12월 31일  
기획재정부장관

##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

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“100분의 30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“2009년 12월 31일”을 “2010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 까지 시행한다. 다만, 제37조제2항제25호 및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**법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공장자동화 물품  
(제46조제2항 관련)연번관세율표**

연번	관세율표 번 호		품 명	규 격
	호	소호		
34	8479	89	적재기 또는 분리기	<p>수치제어,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.</p> <p>6. 골판지 적재용으로서 폭이 1.8미터 이상이고, 최대 분당 250미터 이상의 속도로 생산되는 골판지를 적재할 수 있는 것</p>
35	8442	30	결속기, 포장기 또는 투방기	<p>수치제어,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.</p> <p>2. 기저귀(팬츠형을 포함한다), 생리대, 화장지, 키친타월 또는 미용지를 투입·정렬·포장·실링(Sealing) 및 자동 취출(取出)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ⓐ 최대 포장능력이 분당 50백(bag) 이상인 것</li> <li>ⓑ 종이상자, 필름 또는 투브를 이용하여 포장하는 것으로서 최대 처리능력이 분당 6케이스 이상이거나 분당 6번들 이상인 것</li> </ul> <p>3. 룰 또는 시트상태의 종이제품 처리용으로서 투입·정렬·포장·실링 또는 테이핑 공정으로 구성되고, 자동 취출 기능이 있으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ⓐ 최대 포장능력이 시간당 20룰 이상인 것</li> <li>ⓑ 최대 포장능력이 분당 14리م 이상인 것</li> <li>ⓒ 최대 포장능력이 분당 3백 이상인 것</li> </ul>
42	8441	10,80	절단기, 슬리터(Slitter), 파단분할기, 슬라이싱기, 와이어쏘우(Wire Saw) 또는 클래빙기(Cleaving)	<p>수치제어,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의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.</p> <p>2. 알루미늄박, 알루미늄판, 종이, 필름, 부직포, 스테인리스 또는 판지를 절단한 후 트리밍 또는 권취 할 수 있는 것</p> <p>20. 골판지를 진행방향으로 자른 후 괘선을 넣을 수 있는 것</p>
52	8441 8443	30 91	플렉소폴더스티처 (Flexo Folder Stitcher) 또는 플렉소폴더글루어 (Flexo Folder Gluer)	<p>수치제어,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으로 골판지상자 제조시 인쇄공정 및 봉합공정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.</p> <p>1. 풀봉합 방식으로서 최대 처리속도가 분당 200매 이상인 것</p> <p>2. 철박음 방식으로서 최대 처리속도가 분당 700회 이상인 것</p>